

종합감사

감사 보고서

- 서울농학교 종합감사 -

2025. 6.

교 육 부

감사결과와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기관이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 대상 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3
1. 감사결과 총괄	3
2. 처분 요구 사항	4
(1) 회계연도를 벗어난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 부적정(기관주의)	4
(2)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의무 미준수(기관주의, 주의)	7
IV. 현지조치 사항	10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서울농학교는 2014. 12.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주기를 고려할 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서울농학교의 전반적인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서울농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4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농학교의 교육부 직속 국립학교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교육활동, 기관특성을 고려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인사·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 기타 민원·제보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1. 3월부터 2024. 3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서울농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주요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2024. 3. 18. ~ 3. 22.까지 5일간 감사 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4. 3. 22. 서울농학교의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개최하고, 2024. 7. 10. 질문서를 발부하여 2024. 7. 24.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 마감회의 및 답변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2. 27. 감사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 대상 기관 현황¹⁾

1. 주요 연혁

서울농학교는 1914. 4. 1. 제생원 맹아부로 설립되어 2002. 3. 1. 서울농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0. 9. 1.로 제27대 교장이 취임하였다.

2. 기관 일반 현황

서울농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청각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립특수학교'로 2023. 4. 기준 학생 수는 96명, 정규교원 28명, 기간제교원 12명(현원 40명)으로 총 25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3. 예산 현황

서울농학교 세입·세출 예산은 [표 1]과 같이 2024. 4. 기준 세입결산액은 3,036,120,714원, 세출결산액은 2,750,825,800원이었다.

[표 1] 서울농학교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원)

세입			세출	
장	관	결산액	정책사업	결산액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052,444,840	인적자원 운용	232,903,050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586,531,790
	기타이전수입	333,208,880	기본적 교육활동	754,273,20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64,270,000	선택적 교육활동	221,785,750
	행정활동수입	34,545,170	교육활동 지원	164,348,650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금	551,651,824	학교 일반운영	501,920,240
합계		3,036,120,714	학교 재무활동	289,063,120
			합계	2,750,825,800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문책		경고	주의	계		
	중징계	경징계					
서울 농학교	-	-	-	1명	1명	· 기관주의 2건 【합계 2건】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회계연도 벗어난 예산 집행

- 회계연도를 벗어나 공기정화장치 렌탈료를 선납하여 집행

(나)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의무 미준수

- 농학교 소속 AA(1명), 겸직 허가 없이 지속적인 저술·출판 행위 및 외부강의 미신고

이에 대하여 서울농학교장에게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집행 업무,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는 등 총 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였다.

2. 적극행정 면책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처분 요구 사항 : 2건[붙임 참조]

교 육 부**기 관 주 의**

제 목 회계연도를 벗어난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농학교
조 치 기 관 서울농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서울농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립특수학교로 「초·중등교육법」 및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 등에 따라 학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깨끗한 학교만들기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의 공기정화장치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제1항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으며,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하며,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농학교는 각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공기정화장치 관련 예산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집행 시 해당 회계연도에서 지출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서울농학교는 학교의 공기정화장치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매년 지원받고 있음에도 [표 1]과 같이 2022회계연도에서 집행해야 할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2021회계연도에서 총 29,807,200원 집행(2022. 2. 16.)하였고, 2023회계연도와 2024회계연도에서 각각 지출해야 할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2022회계연도에서 총 58,673,120원 집행(2023. 2. 9.)하였다.

[표 1]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원)

회계연도	교부내역	교부액	집행액	계약집행일	내역	회계연도 준수 여부	비고 (할인율)
2020	1차 교부	38,620,000	29,807,200	2020.3.31.	2020년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용역비 지출 (1년 선납, 2020.3월~2021.2월)	○	5.0%
2021	1차 교부	39,140,000	3,137,600	2021.3.29.	2021년 3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급	○	-
	2차 교부	25,360,000	29,807,200	2021.4.12.	2021년 공기청정기 렌탈료 납부 (1년 선납, 2021.4월~2022.3월)	○	5.0%
	-	-	29,807,200	2022.2.16.	2022년도 공기청정기 렌탈료 납부 (1년 선납, 2022.4월~2023.3월)	×	5.0%
2022	1차 교부	64,500,000	58,673,120	2023.2.9.	2023년~2024년도 공기청정기 렌탈료 납부(2년 선납, 2023.4월~2025.3월)	×	6.5%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서울농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일반회계와 학교회계간 회계기간이 달라 학교예산 운용에 고충이 있었고 2021년 예산이 3월 말에 교부되어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답변하면서, 학교는 학교 운영 기본경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10만원 단위의 적은 금액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표 2]와 같이 선납에 따른 할인을 혜택이 커져 이를 우선 고려하여 집행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2]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74대) 렌탈료 선납에 따른 예산 절감 현황

(단위: 원)

회계연도	정상 계약금액(A)	할인 계약금액(B)	예산 절감액(C=A-B)	비고(할인율)
2021	31,376,000	29,807,200	1,568,800	1년분 선납(5.0%)
2022	62,752,000	58,673,120	4,078,880	2년분 선납(6.5%)

또한 앞으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서울농학교는 회계연도를 벗어나 공기정화장치 렌탈료를 집행함으로써 「국립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서울농학교장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교 육 부

기관주의·주의

제 목 겸직 허가 및 외부장의 신고 의무 미준수

소 관 기 관 서울농학교

조 치 기 관 서울농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서울농학교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겸직 허가 및 외부장의 신고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장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장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장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농학교 교직원이 연구원으로 개발연구 집필 등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부강의를 한 이후에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서울농학교 소속 AA는 [표]와 같이 “□연구 집필” 등 2건에 대해 공동연구원으로 지속적인 저술·출판 행위를 실시하면서 겸직 허가 없이 참여하였다.

[표] 겸직 허가 미신청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직위(급)	성명	기관명	활동 내용	집필기간	보수금액	겸직 신청 여부	비고
1		AA	☐☐☐대	☐ 집필	2022.3.1.~ 2022.11.30.	1,607	×	연구원
2			☐☐☐대		2022.10.27.~ 2023.11.30.	5,898	×	연구원
합 계						7,505		

또한, 위 AA는 2021. 12. 6. ☐☐☐대학교의 요청으로 “☐(온라인)”이라는 주제로 외부강의를 하였으나, 이를 학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등 의견

서울농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외부 강의 및 겸직 관련 기관 차원에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등 신고 처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교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AA도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겸직허가의 경우 ㄷ으로 바뀐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허가를 받았다고 착각하였고, 외부강의의 경우 지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온라인 강의를 승낙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사례비를 받은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앞으로는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유념하여 겸직허가 신청 및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복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농학교장은

- 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기관주의)
- ②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연구원으로 저술 등에 참여하고 외부강의를 학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AA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IV. 현지조치 사항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1. 대체휴무 사용기한 초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농학교 AF 등 3명은 대체휴무 발생일로부터 6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최소 5일에서 최대 109일을 초과하여 대체휴무를 사용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3장, “대체휴무 사용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향후 소속 구성원이 대체휴무 사용 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교직원 교육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농학교 AG는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임에도 2022.4.15. 성과상여금 지급(회수완료)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시기 바람